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999
----------	------

제출연월일 : 2020. 7. 15.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합병·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및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신고를 함”을 “신고가 수리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제67조제3항제12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합병·상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합병·상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④·⑤</u> (생략)</p> <p><u>⑥</u> 시·도지사는 <u>제5항</u>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u>⑦</u>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 및 <u>제5항</u>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p>	<p>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u>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u>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⑤</u>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u>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p> <p><u>⑥·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u>⑧</u> ----- <u>제7항</u>----- ----- -----.</p> <p><u>⑨</u> ----- -- <u>제7항</u>----- -----</p>

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

-----.

⑩ ----- 제6항까지-----

----- 제7항-----

-----.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28조제7항-----

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
행실적이 없는 경우

5. ~ 17. (생략)

② ~ ④ (생략)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생략)

<신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
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
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
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
을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5.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 신고가 수리됨 -----

-----.

④ 제3항-----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

<p>제67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1. (생략)</p> <p>12. 제28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3. ~ 19. (생략)</p> <p>④ (생략)</p>	<p><u>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u></p> <p>제6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제28조제7항----- ----- -----</p> <p>13. ~ 19.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